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7월 3일

나. 발 의 자 : 김상조, 김수민, 김재상, 김정곤, 김정미,
김춘남, 김태근, 이명희, 이수태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7월 9일

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 상 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일부 조례로 위임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육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교육연구시설의 범위 확대(안 제33조관련 별표 22 제2호라목)
‘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’를 ‘교육연구시설’로 개정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「건축법 시행령」
- 관련부서 의견
- 도시과 : 의견 없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‘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,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
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,
-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육편익
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,
“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”를 ⇒ “교육연구시설”로 개정하는 것임.

□ 검토 결과

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, 원안대로
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